

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 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6. 1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민행정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6월 13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13일 원안 회부
다. 상정일자 : 제16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6. 6. 1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)

가. 제안이유

구민에게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다양한 문화,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 및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「종로문화체육센터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명칭 및 위치 (안 제1조 내지 제3조)
 - 종로문화체육센터
 -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84-1호
- 관리 및 운영 (안 제6조)
 -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종로구청장이 관리·운영함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음.
- 운영위원회 (안 제8조)
 - 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종로문화체육센터운영위원회를 둠.

- 시설의 사용 (안 제9조)
 -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함.
- 사용료 징수, 납부 및 반환 (안 제10조 및 제11조)
 -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함.
 -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.
 -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승인 후 또는 행사종료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함.
- 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 발행 (안 제12조)
 -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음
 -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, 시설사용 종료 후 입장수익 총액을 통보하여야 함
- 기 타 (안 제14조 및 제15조)
 -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
 -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

- 김 성 배 위원의 수정안 동의

6. 修正案의 要旨

○ 수정이유

- 제8조제1항중 “문화체육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”에서 조문 “운영위원회”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분명하므로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종로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”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

○ 수정안 본문

안 제3조 제1항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종로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”로 함.

7. 審 査 結 果 : 수정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함)

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 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 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제1항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종로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	안	수	정	안
제8조(운영위원회) ①문화체육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<u>운영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	제8조(운영위원회) ① -----		----- <u>종로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</u> -----
② (생 략)				② (현행과 같음)